

인천지방법원 2021. 11. 23 선고 2021가단14518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1. 2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0. 10. 21. 접수 제528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이 법원이 2021카정14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1. 9. 8.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.
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 남해인

별지